# 업무 위탁 계약서

본 업무 위탁 계약(이하 "본 계약")은 20\_년 \_월 \_일, 아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.

	위탁자(이하 "갑")	수탁자(이하 "을")
회사명/성명		
주소		
대표이사/성명		

<sup>&</sup>quot;갑"과 "을"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 **1**조 목적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제 2 조에 명시된 업무(이하 "본 용역")의 수행을 위탁하고, "을"은 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"갑"에게 제공하며, "갑"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용역의 범위

"을"이 수행할 "본 용역"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\*\*[별첨 1] '과업지시서'\*\*에 따른다. "갑"과 "을"은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 3조계약기간

- ① 본계약의 기간은 20\_년 \_월 \_일부터 20\_년 \_월 \_일까지로 한다.
- ②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#### 제 4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

- ③ "갑"은 "을"에게 "본 용역" 수행의 대가로 총 \*\*금 원 (₩, 부가가치세 별도)\*\*을 지급하다.
- ④ 용역대금은 다음 각 호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  - 1. 계약금: 금 \_\_\_\_\_원 (총 계약금액의 \_\_%), 20\_년 \_월 \_일까지
  - 2. 잔금: 금 \_\_\_\_\_원 (총 계약금액의 \_\_%), 제 5 조에 따른 검수 완료 후 \_\_영업일 이내
- ⑤ "을"은 각 대금의 지급 시기에 맞춰 "갑"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"갑"은 이를 수령한 후 대금을 "을"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.
  - \* 은행명:
  - \* 계좌번호:
  - \* 예금주:

#### 제 5 조 업무의 수행 및 보고

- ① "을"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"본 용역"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요청이 있는 경우, "본 용역"의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구두로 "갑"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6 조 결과물의 제출 및 검수

- ① "을"은 계약기간 내에 "본 용역"의 최종 결과물을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최종 결과물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\_\_영업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와의 부합 여부를

- 검수하고, 그 결과를 "을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검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, "을"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수정· 보완하여 "갑"에게 재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이 제 2 항의 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, 최종 결과물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 7 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

- ① "을"이 "본 용역"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,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"갑"이 제 4 조의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한 시점에 "갑"에게 귀속된다.
-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, "을"이 "본 용역" 수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존 저작물이나 기술 등은 "을"의 소유로 한다.

#### 제 8 조 비밀유지

-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고,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,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 10 조 손해 배상

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 **11** 조 양도금지

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,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# 제 12 조 불가항력

천재지변, 전쟁, 전염병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그 책임을 면한다.

# 제 13 조 분쟁의 해결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 $\mathbf{1}$  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#### [별첨 1] 과업지시서

# 2025 년 7월 12일

공급자:	구매자:
회사명: 주식회사 000	회사명/성명: 주식회사 △△△
주소:	주소:
대표이사:(인)	대표이사/성명: (인)